

개  
개인정보  
보호법  
2021  
전면개정안

## 유출시 안전미조치시 과징금 전체매출의 3% 포함 전체매출의 3%과징금 부과11대 업무상 과실

- 1** 변화
- (기존 처벌 폐지)  
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경우  
과징금 위반관련매출의 3%
- 주민번호유출시 안전조치 미조치 경우  
과징금 5억
- 형사처벌 경우 벌금 5천만원
- 
- [폐지]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
- [신설] 과징금 전체매출의 3%로 일원화
- (기존 최대과징금 규정)  
전체매출의 3% 과징금이 부과되는 과실은  
가명정보를 개인식별목적으로 처리  
했을 경우 1개였음
- 
- [신설] 11가지로 증가  
업무프로세스에 따라  
10가지 경우 신설
- 2** 변화
- 과징금부과가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 
[모든 처리자 대상으로 개정] 손해배상책임이행 보험 의무화
- 3** 변화
- 과징금 부과시 근거가 되는  
중대한 침해사고여부 판단기준 8가지 제시
- [신설] 업무형태와 규모, 정보민감도에 따라 과징금 증액
- 4** 변화
- [신설]  
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 
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적용

개정 개인정보보호법 64조의2  
**전체매출의 3% 과징금이 부과되는 11가지 경우**

**폐지된 처벌규정**

[정] 정보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

		해당 위반규정		형사 (양벌 +몰수 포함)	경제 재제	
				징역 *년 /벌금 *천만	과태 *천만	과징금
1.	15조1항 수집	동일	1. 동의 2. 법률규정 3. 공공기관업무수행 5.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이익 6.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	[정] 5/5	5	[정] 위반관련 매출 3%
		개정	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<b>필요한 경우</b> (기존)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			
		신설	7. <b>공중위생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긴급 필요 &amp; 일시적 처리</b>			
1.	17조 제공	1항	〈제공가능 경우〉 1. 동의 2. 수집목적범위에서 제공	5/5		[정] 위반관련 매출 3%
		2항	〈동의시 고지〉 1. 받는다 2. 목적 3. 항목 4. 기간 5. 동의거부 권리 56		3	
1.	18조. 목적외 이용 제공	1항	목적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	5/5		
		2항	〈이용 및 제공가능 경우〉 1. 별도동의 2. 법률규정 3.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이익 외 9호까지			
	19조 제공받은자 제한	동일	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이용 및 3자제공이 가능한 경우 1. 별도동의 2. 법률	5/5		
2	22조의2 1항 아동정보 보호	적용 대상 확대	만 14세미만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. 동의를 위한 정보는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, <b>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</b> (기존) 정보통신사업자→모든 처리자에게 적용	[정] 5/5	5	[정] 위반 관련매 출 3%
3	23조 1항 민감정보	동일	민감정보는 별도동의	5/5		[정] 위반 관련매 출 3%
	24조 1항 고유식별정보	동일	〈처리가능 경우〉 1. 별도동의 2. 법령	5/5		
4	24조의2 1항 주민번호	동일	〈처리 가능 경우〉 1. 법률·령·국회, 대법원, 헌재, 중앙선관위, 감사원규칙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 3.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		3	
5	26조4항 업무위탁	동일	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, 감독			[정] 위반 매출 3%
6	28조의5.1항 가명정보	동일	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 금지	5/5		전체 매출 3%

##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64조의2. 1항 전체매출의 3% 과징금이 부과되는 11가지 경우

폐지된 처벌 규정

[정] 정보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

형사 (양벌 + 몰수 포함)	경제재제
--------------------	------

		해당 위반규정		징역*년 /벌금*천만	과태 *천만	과징금
7	28조의8 국외이전	동일	1. 별도동의			[정] 위반관 련매출3%
		신설	2. 법률, 조약 or 국제협정			
		동일	3. 계약체결, 이행에 필요~처리방침에 공개 or 고지			
		신설	4.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			
		신설	5.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 or 국제기구로 이전			
		동일	1. 개인정보 항목 2. 국가, 시기 및 방법			
		개정	3. 이전받는 자의 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연락처) (기존) 정보보호책임자 연락처			
		동일	4. 이전받는자의 이용목적 및 보유·이용 기간			
		신설	5. 국외이전 거부방법과 절차, 거부하는 경우의 효과			
		동일	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시행			
동일	5. 이 법을 위반하는 국외이전계약 체결 금지					
8 불복시	28조의9 국외이전 중지명령	신설	1. 28조의8 위반시			
			2. 이전받는 처리자 or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부적절 3.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② 7일 이내에 중지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			
9 유출시 미조치시	29조 안전 조치	동일	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	2/2		주민번호 유출시 5억  [정] 위반관 련매출3%
10. 11 위반하여 이용,제공시	36조 정정·삭제	동일	①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정 또는 삭제 요구가능	2/2 [정]5/5		
			② 지체없이 정정삭제후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			
	37조 처리정지	동일	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의 정지 요구	2/2		
			② 지체 없이 처리정지해야 함			

개정 개인정보보호법 64조의2. 3항 (기존 34조의2. 2항, 39조의15. 3항을 일원화)

## 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 8가지

1 2 3	39조의 2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대상 과징금 규정 기준	동일	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		동일	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		동일	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
4 5 6	34조의2. 2항  개인정보 처리대상 주민번호유출시 과징금규정 기준	추가	암호화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
		추가	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정도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
6		동일	피해의 회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
7			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
8		신설	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

## [모든 처리자대상으로 개정] 손해배상의 보장

		개정
손해 배상 의 보장	39 조의 16	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	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. 1. 공공기관 2.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한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3. 매출액,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개인정보처리자
		③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[신설] 개인정보보호법 우선 적용

		기존	신설
다른 법 률 과 의 관 계	제 6 조	(기존)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  ②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